

신앙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

제정 : 2000. 06. 26.

개정 : 2015. 02. 06.

개정 : 2015. 08. 07.

개정 : 2022. 08. 05.

담당 : 일립교육과(02-950-5446)

----- 목 차 -----

제1조(목적)	제2조(졸업)	제2조의2(범위)	제3조(신앙훈련의 내용)
제4조(이수방법)	제5조(장학 대상 제외)	제6조(출석인정)	제7조(특별교육)
제8조(학과담임목사)	제9조(기타)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1조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학생 신앙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 대학의 설립이념과 교육목적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08.07)

제2조(졸업) 삭제(개정2003.3.1).

제2조의2(범위) 신앙교육 및 훈련의 범위는 채플(경건훈련), 개강수련회(FT, 사경회), 밀알훈련, 전도훈련, 성서적 세계관 교육, 기타 일립교육과에서 공고하는 특별집회 및 방학 중 신앙생활을 포함한다(개정 2015.08.07)(개정 2022.08.05.)

제3조(신앙훈련의 내용) 삭제(개정2003.3.1).

제4조(이수방법) 모든 재학생은 다음 각 호의 신앙교육 및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개정 2015.08.07)

1. 채플(경건훈련) : 학기별 채플 이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5.08.07)
 - 가. 5일 수업자 : 수업일수의 75% 이상 참석해야 한다.
 - 나. 4일 수업자 : 수업일수의 84% 이상 참석해야 한다.
 - 다. 3일 수업자 : 수업일수의 100% 이상 참석해야 한다.
2. 개강수련회(F.T) : F.T 출결은 해당 주간과목에 반영한다. (개정2015.08.07)
3. 밀알훈련 : 입학년도에 밀알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 일립교육과장의 허가를 받아 2년차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2015.08.07)(개정 2022.08.05.)
4. 전도훈련 : 전도훈련반 활동보고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2015.08.07)

5. 방학 중 신앙생활 (개정2015.08.07)

가. 방학중 이행해야 할 신앙생활은 다음과 같다.

- ㄱ. 교회출석보고서
- ㄴ. 묵상지
- ㄷ. 독서보고서

나. 가에 대한 보고서는 개강 후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 가에 대한 보고서 미제출자는 경건훈련이 NP처리된다.

라. 단 1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교목실장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경건훈련을 이수함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6. 성서적세계관교육: 학생들은 본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성서적세계관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5조(장학 대상 제외) 삭제(개정2003.3.1).

제6조(출석인정) 경건훈련의 출석 인정은 다음에서 정하는 각호와 같다(개정2003.3.1).

1. 예배에 참석하여 출석 카드 제출 등으로 참석이 확인되었을 시,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10분 이상 지각이나 중도 퇴실자는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불참하였을지라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예배 시작 전까지 예배 참석 인정 허가원을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가. 직계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5일 범위) - 증빙서류 7일 이내 제출

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3주 이내 범위) - 퇴원 후 7일 이내 진단서 제출

다. 병사 관계(징병검사, 예비군훈련)로 인한 결석(해당기간) 허가 원 제출 시 통지서 첨부

라. 실습, 학술 답사 등 교육에 의한 결석(해당기간)

마.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회의, 행사참가(해당기간)

- 허가 원 제출 시 통지서 첨부

바.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 참석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수행(해당기간)

- 허가 원 제출 시 통지서 첨부

사. 졸업예정자가 국가 또는 기업체 채용시험 등에 응시하는 경우(해당기간)

- 허가 원 제출 시 통지서 첨부

제7조(특별교육) 경건훈련 미 이수 자는 방학 중에 실시하는 특별훈련에 참석하여 2회에 한하여 이수 할 수 있다. (개정2003.3.1).

제8조(학과담임목사) 학생들의 신앙교육과 지도를 위해 학과 담임목사를 둘 수 있다. 학과담임목사 제도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정 2015.08.07)

제9조(기타) 기타 신앙 교육 및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일립교육과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15.08.07)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